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0739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07391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합533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2. E

변론 종결 2018. 9. 6.

판결 선고 2018. 10. 1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합53349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D는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접수 제522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1. 19. 접수 제21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27,586,160원을 지급하고, 피고 E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접수 제522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78,689,119원, 피고 E은 각 24,153,1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망 F의 보험금 99,000,000원 중 각 상속지분 1/5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제3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0행의 "나)"를 "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1행의 "보존행위로서"를 "보존행위로서"로 고쳐 쓴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하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D는 '원고들과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액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예금액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제5호증의 1, 2, 3)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현중

판사성충용

판사최현중

별지